

2021. 1. 6.



“작은 힘으로 큰 고충을 덜어 드립니다.”

202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연번	제 목	쪽수
1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2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3
3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활동	4
4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활동	6
5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사진	7
6	참고자료	9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회 관한 조례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회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행정이 다양화 되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서 발생하는 행정과 시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시책의 중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 안정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설치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관할 범위

- 익산시 및 소속기관(본청·사업소·읍면동)
- 익산시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연혁

- 2007. 5. 1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7. 9. 28.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07. 5. 29. 감사팀 내 직소민원 및 시민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 2008. 9. 22. 1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 ▶ 위원(5명) : 채준섭, 김은진, 김진병, 최태정, 최환석
 - ▶ 위촉기간 : 2008. 9. 22. ~ 2012. 9. 21.(4년간)
- 2010. 1. 27.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추진
- 2010. 2. 27. 제2회 국민신문고 대상 수상[위원장 표창]
- 2012. 11. 29. 2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 ▶ 위원(6명) : 소병기, 김진우, 윤영숙, 이승엽, 주세균, 차승조
 - ▶ 위촉기간 : 2012. 11. 29. ~ 2016. 11. 28.(4년간)
- 2015. 12. 3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위촉
 - ▶ 이정웅, 류신걸 / 2015. 1. 1. ~ 2018. 12. 31.(4년간)
- 2016. 11. 2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위촉
 - ▶ 문지연, 김정미, 오치광 / 2016. 12. 1. ~ 2020. 11. 30.(4년간)
- 2017. 7. 28.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추진
- 2018. 12. 2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 ▶ 신혜경, 김경 / 2019. 1. 1. ~ 2022. 12. 31.(4년간)
- 2020. 1.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위촉
 - ▶ 김슬기 / 2020. 1. 17. ~ 2024. 1. 16.(4년간)
- 2020. 11. 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 ▶ 김형노, 안병철 / 2020. 12. 1. ~ 2024. 11. 30.(4년간)

2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 위원회 구성기준

- 인원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임기 : 4년 단임제
- 위원의 자격
 -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 ▶ 판사, 검사, 변호사
 - ▶ 4급 이상 공무원
 -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소지 후 5년 이상 경력자
 -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위원명단

성명(직책)	소속	직명	임기	자격요건
오치광 (위원장)	 한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16. 12. 1 ~ 2020. 11. 30	전문가
김정미 (위원장)	 원광대학교 (생물환경화학과)	교수	2016. 12. 1 ~ 2020. 11. 30	학계
신혜경 (위원장)	 한국부인회 익산지회	회장	2019. 1. 1 ~ 2022. 12. 31	여성단체
김경 (위원장)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9. 1. 1 ~ 2022. 12. 31	시민단체
김슬기 (위원장)	 김슬기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 1. 17 ~ 2024. 1. 16	법조계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활동

□ 고충민원 처리조직

- 소통민원실 운영 : 4명(일반직 공무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비상근

□ 고충민원 처리절차

- 민원 접수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시정에 바란다) 등
- 직접 해결이 가능한 민원 : 소통민원실
-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 : 월 2회(매월 둘째·넷째주)
 - ▶ 현지 확인 및 처리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 상정
- 고충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 ▶ 1차 회의 - 소관부서 의견청취, 현지조사 및 민원인 의견청취
 - ▶ 2차 회의 - 심의·의결 및 의결서 작성
- 시장 및 관계기관(민원인 포함) 위원회 의결서 통지
- 시장 및 관계기관장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 30일 이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공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의결 : 0건

□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 결과 : 19건(인용 16, 기각 1, 조정 1, 기타 1)

- 분야별 : 19건(농업 8, 도로 4, 상하수도 3, 교통 2, 건설 1, 시민안전 1)

연번	월 일	민 원 내 용	위 원 명	처리(계획)결과	처리부서 (담당자)
1	2020.3.6 (조정)	**읍 **리 198-5, 2014년 완료한 와리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우수 관거사업)으로 민원인 소유의 건축물 <u>계단 처짐 발생으로 대책 요구</u> (계단 및 데크 포함 전체 보수)	오치광	11. 30. 계단 처짐 보수 공사비 1/2씩 부담	시민안전과 (김**)
2	2020.3.9 (인용)	**면 **리 산 4-1, 농로 포장이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질퍽거려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니 <u>사리부설</u> 요청 (L=100m)	김 경	4. 1. 완료	미래농업과 (김**)

연번	월 일	민 원 내 용	위 원 명	처리(계획)결과	처리부서 (담당자)
3	2020.3.23 (인용)	**면 ** 산 21-1, 농로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 여러 군데 패여서 비가 오면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불편 하니 <u>농로 사리부설</u> 요청(L=100m)	김정미	5. 29. 완료	도로과 (이**)
4	2020.4.13 (기타)	**면 **리 751, 기존의 진입로는 낭산리 744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바뀐 후로 트렉타 등 영농기계 진입 금지에 따른 <u>법률적 자문</u>	김슬기	4. 13. 완료	-
5	2020.4.27 (기자)	**동 445-3, 배수로내 <u>퇴적물 배수</u> 원활 하지 않아 영농에 불편하니 <u>제거</u> 요청 (L=130m)	신혜경	인근 업체인 정진플랜트에서 퇴적물 제거완료	농어촌공사 춘포지사 (오**)
6	2020.5.11 (인용)	**면 **리 1136, 주변 흙이 무너져 논과 배수로에 흘러들어 영농에 어려움 있으니 <u>축대 설치</u> 요청(L=70cm)	오치광	2021 추진계획	미래농업과 (조**)
7	2020.5.25 (인용)	**동 ** 2길 13, 농로로 진입하는 통로가 비포장이고 습지 상태로 변해 농기계 이동이 불편하고 주변 집들의 부식을 야기하니 <u>마을안길 보수</u> 요청	신혜경	12. 18. 완료	도로과 (남**)
8	2020.6.8 (인용)	**동 1528, 농로 사면의 기반이 침식되어 붕괴 될 위험이 있고, 농기계, 차량 전복 위험 <u>농로 보수</u> 요청	김정미	6. 19. 완료	건설과 (구**)
9	2020.6.22 (인용)	**면 **리 221-29, 차량 진출입로 추가 설치를 위한 <u>도로 접용 허가</u>	오치광	7.29 도로 접용허가	도로과 (강**)
10	2020.7.13 (인용)	**면 **리 999-9, 호우시 빗물로 인해 밭의 흙이 흘러 내려 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까지 범람하니 <u>배수로 보수</u> 요청	김 경	8. 28. 완료	하수도과 (허**)
11	2020.7.27 (인용)	**동 991-20, 농로에 폭우 및 장마철에 토사가 흘러 내려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u>농로 사리부설</u> 요청 (L=100m)	김슬기	8. 28. 완료	미래농업과 (하**)
12	2020.8.10 (인용)	민원인의 집은 **면 ****로 171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과속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집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으니 <u>방지턱 설치</u> 요청	김 경	2021년 추진계획	교통행정과 (임**)
13	2020.8.24 (인용)	**동 2가 712 (가온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인도 중앙에 설치로 통행 불편 <u>이전 설치</u> (건축시 출입구)	김정미	2021년 추진계획	교통행정과 (권**)

연번	월 일	민 원 내 용	위 원 명	처리(계획)결과	처리부서 (담당자)
14	2020.9.14 (인용)	**면 **리 1050-3, 농로 옆 배수로가 없어 농로의 지반이 침하되어 위험하니 <u>농배수로 설치</u> 요청	오치광	2021 추경예산 확보 계획	미래농업과 (조**)
15	2020.9.28 (인용)	**면 **로 524-19, <u>상수도 부설도로</u> 노면상태 불량 <u>정비</u> 요청(L=80m)	신혜경	2021년 추진계획	상수도과 (김**)
16	2020.10.13 (인용)	**면 **리 717-8 (김남용 소유, 전, 374㎡ 분묘 10기 조성)가 농지 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제3자에게 경매 매각 <u>농지 소유권 원상 회복</u> 요청	신혜경	10. 26. 완료 < 농지법(1973)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함>	낭산면 (송**)
17	2020.10.26 (인용)	**동 493 도로가 한쪽으로 급하게 기울어져 차량 통행이 불편하며 특히 짐 실은 차량은 전복의 위험이 있으니 <u>도로 보수</u> 요청	김 경	2021년 추진계획	도로과 (남**)
18	2020.11.9 (인용)	**면 **리 484-3, 산에서 물이 내려와 마을도로 쪽으로 배수가 되고 호우시 배수 양이 많아 통행이 불편하니 <u>배수로 설치</u> 요청	김정미	11. 13. 완료	하수도과 (횡**)
19	2020.11.23 (인용)	**면 **리 1279 비포장인 농로라 농 기계 등 진출입 불편 포장 요청 (L=30m)	신혜경	구거 여유부지 추진 불가	농어촌공사 (박**)

4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 시달(2. 4. / 읍면동)**
- 지방지 등 언론보도 홍보 : 2회**
 -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김슬기 변호사 임명 (1. 20. / 3곳)
 - 시민고충 언제나 기울이겠습니다 등 (10. 7. / 3곳)
- 시정홍보지 게재 홍보 : 2월호**

2020년 01월 20일 월요일 012면 사람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김슬기 변호사 임명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 김
슬기 변호사(35)가 임명됐다.

정현을 의산시장은 지난 17일 의산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김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
다. 김 변호사는 문지연 위원(변호사)
의 사임에 따른 후임자 위촉으로 '위
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 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새
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
득한 후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의산시청 법
무통계제장 등을 거
쳐 현재는 법률사무
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앞으로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행
정처분 및 행정재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와의 중립적 입장
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행정
과 시민의 가교로서 임기는 4년이
된다.

의산·영천호 기자

전북제일신문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006면

“시민 고충 언제나 귀기울이겠습니다”

의산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
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소통장
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
회는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으
로, 현재까지 150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치관의 원장
을 비롯해 변호사, 간축사, 교수 등 5명 위원으로 구성돼 2008년부터 운영돼왔다.

‘옴부즈만과의 만남의 날’은 올 3
월부터 매월 둘·네째주 월요일(오
전 9시~12시)에 위원들이 순번제로
5명 위원으로 구성돼 소통민원실(시
청 본관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
로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농도 진입로
통행 방해 관련 법률 사항, 농도 사
리부설 조건, 산습 청수도 인한 우수
관 설치, 상수도 부설도로 파손에 대
한 정비, 주민 안전을 위한 방지턱

설치, 기업체의 진입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겉용 허가 등 고충민원을
해결하거나 추진 중이다.

오치관 위원장은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라며 “같은 시민들께서 고
충민원 해결사인 시민고충처리위원
회를 찾고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으로 4년간 성실히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오치관(건축사), 김정미
(교수) 2명이 임기 만료임에 대가를
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별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배수 추천을 받았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추
천받은 이들은 정현을 시장이 각 분
야별 1명씩 최종 선정한 후 오는 19
일부터 개최되는 제2회(의산시의
회임시회) 회의를 빌어 위촉될 예
정이다.

/의산=박승우 기자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신청대상 : 의산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방문 및 문서(우편 또는 팩스),
전화, 인터넷(시정에 바란다) 등

• 연락처 ☎ 859-5012, 팩스 859-5098

• 주소 : 의산시 인북로 32길 1(의신시청 1층
소통민원실), (우) 54622○ 언제 : 3월~11월(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09:00~12:00)○ 누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5명)

○ 처리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사항

•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

○ 제외대상 : 사외간의 권리와/or 개인의

생활에 관한 사항 등

○ 문의 : 의산시 감사담당관 ☎ 859-5012, 5032

5

의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사진



2020. 1.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김슬기)



2020. 11. 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김형노, 안병철)



3. 9. 김경 위원(**면)



3. 23. 김정미 위원(**면)



5. 11. 오치광 위원장(**면)



5. 25. 신혜경 위원(*동)



6. 8. 김정미 위원(**동)



7. 13. 김경 위원(**면)



7. 27. 김슬기 위원(**동)



9. 28. 신혜경 위원(**면)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익산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익산시의 의무) ① 시장과 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03 조례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⑧ ~ ⑨ (생략)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5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5. “신청인”이라 함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표”라 함은 위원회의 권고, 시정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국가 또는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가 또는 익산시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4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보며, 의결 후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며, 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신청,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시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 사안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및 그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9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 등) 합의의 권고 및 조정과 그 절차,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과 관계 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23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관계 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점검 대상이 되는 시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6조(고충민원의 기록관리)** ① 고충민원처리기록은 관리번호를 붙여 매건마다 별책으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중인 고충민원과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시 접수된 때에는 별도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먼저 접수된 고충민원에 합철하여 처리한다.
③ 기록을 접수 또는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붙여 편철하고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대로 가철한다.

제27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2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03 규칙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 광역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명칭	연번	지자체	명칭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	경기도	옴부즈만
2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초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명칭	연번	지자체	명칭
1	서울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17	경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2	서울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18	경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3	서울 관악구	옴부즈맨	19	경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4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	20	경기 수원시	시민가디언
5	서울 동대문구	옴부즈만	21	경기 광명시	시민인권옹호관
6	서울 마포구	옴부즈만	22	경기 평택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7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23	강원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8	서울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4	충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9	서울 은평구	옴부즈만	25	충북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26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1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27	경북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12	경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28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13	경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9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4	경기 용인시	옴부즈만	30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15	경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1	대구 북구	청렴옴부즈만
16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			